

## 부속서 I

### 니카라과의 유보목록

#### 주해

1. 이 부속서의 니카라과의 유보목록은 제 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 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니카라과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기존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와 관련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4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 조치를 지칭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상법(Código de Comercio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관보 제248호(1916.10.30)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해외에 정식으로 구성된 회사 중 니카라과에 설립되었거나 대리점 또는 지점을 가진 회사는, 해당 등기소에 등록된 일반위임장을 보유하고 니카라과에 주소를 둔 법률대리인을 유지한다.</p>

2. 분야	음악가 및 예술가
하위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15호, 국립 예술포현 촉진 및 니카라과 예술가 보호법 (Ley No. 215, Ley de Promoción a las Expresiones Artísticas Nacionales y de Protección a los Artistas Nicaragüenses), 관보 제134호 (1996.7.17)</p> <p>법률 제723호, 영화 촬영 및 시청각 예술법(Ley No. 723, Ley de Cinematografía y de las Artes Audiovisuales), 관보 제198호(2010.10.18)</p> <p>국회 법령 제7445호, 라틴 아메리카 영화 공동제작 승인에 관한 법령(Decreto AN 7445, De aprobación del Acuerdo Latinoamericano de Coproducción Cinematográfica), 관보 제60호(2014.3.28)</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영화제작자와의 공동 제작은 최소 30퍼센트의 예술적, 기술적 및 창의적인 니카라과 국민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은 10퍼센트 이상의 니카라과의 경제적 참여를 보유하여야 한다.</p> <p>니카라과에서 제작된 외국 영화제작은 영화 생산을 위하여 최소 20퍼센트의 기술적, 창의적 및 예술적 니카라과인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p> <p>제작자가 니카라과인 인력의 참여를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작자는 그 국가에서 시행될 예산 비용의 5퍼센트를 현금으로 국립영화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지급할 것이다.</p> <p>영화 제작의 목적으로 그 나라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제작자는 국립영화진흥기금에 귀속될 영화제작관세를 지불하여야 한다.</p> <p>어떠한 형식으로도든 모든 형태의 시청각 또는 영화 제작을 수행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니카라과 국립영화관에 등록되어야 한다.</p> <p>제작이 완료되면, 해당 작품의 사본은 니카라과 국립영화관의 영상 자료원에 보관되어야 한다.</p> <p>니카라과 밖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된 시청각 광고작업은 니카라과 영역 내의 상영을 위하여 니카라과 국립영화관에 관련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화관, 텔레비전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상영 또는 전송되는 시청각 광고물의 20퍼센트는 니카라과의 제작물이어야 한다.</p>

	<p>모든 외국의 예술가 또는 음악밴드는 사전 계약 또는 정부 협정을 통해서만 니카라과에서 공연할 수 있다.</p> <p>니카라과에서 상업적 성격의 프로그램, 공연 또는 리뷰에 출연하는 외국 예술가는 유사한 공연을 하는 니카라과인 예술가 또는 단체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p> <p>외국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니카라과인 예술가의 참여를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연으로부터 그들이 얻은 순수입의 1퍼센트를 니카라과 문화연구소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예술가 또는 단체의 출신 국가가 니카라과인 예술가 또는 단체에게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니카라과에 세워지는 공공, 회화 및 조각 기념물의 설계 및 건축은 경쟁을 통하여 니카라과인 예술가에게 낙찰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 니카라과인 예술가와 연계된 외국인에게 낙찰될 것이다.</p> <p>니카라과에 세워지는 공공, 회화 및 조각 기념물의 설계 및 건축을 위하여 선정된 외국인은 니카라과인 예술가와의 연계를 통하여 작업한다.</p> <p>니카라과인 전문가 또는 라틴 아메리카 영화 공동제작협정 회원국의 거주자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상물의 경우, 그러한 공동 제작물의 감독은 해당 협정 회원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또는 그 밖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 출신의 공동 제작자가 담당한다.</p>
--	---

3. 분야	관광 - 호텔, 식당, 관광 가이드, 렌터카 및 그 밖의 관광 관련 활동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306호, 니카라과 공화국 관광산업 인센티브법(Ley No. 306, Ley de Incentivos a la Industria Turís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관보 제117호(1999.6.21) 및 그 개정</p> <p>니카라과 회사 및 관광활동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mpresas y Actividades Turísticas de Nicaragua), 관보 제99호(2001.5.28)</p> <p>니카라과 대형 여행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los Operadores de Viajes de Nicaragua), 관보 제100호(2001.5.29)</p> <p>렌터카 및 수상운송회사 활동 규제에 관한 규정(Reglamento que regula la actividad de las empresas arrendadoras de Vehículos Automotrices y Acuáticos), 관보 제108호(2001.6.8)</p> <p>관광 가이드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Guías de Turistas), 관보 제40호(2001.2.26)</p> <p>니카라과 소형 여행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Agencias de Viajes de Nicaragua), 관보 제96호(2001.5.21)</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서 관광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외국 국민은 니카라과에 거주하거나 니카라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이 조항은 유람선 여행 중 관광 서비스의 제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관광산업 장려법을 활용하는 모든 인은 니카라과인 인력을 고용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다만, 노동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전문가 및 전문기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그러한 인은 관광업계의 요구에 따라 니카라과 시민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이다.</p> <p>니카라과인만이 관광 가이드가 될 수 있다.</p>

4.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66호, 법률 본문 제776호, 「카지노 및 도박장 통제 및 규제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776호) 본문 및 그 통합 개정(Ley No. 766, Texto de la Ley No. 776, “Ley Especial para el Control y Regulación de Casinos y Salas de Juegos de Azar”, con sus Reformas Incorporadas), 관보 제238호(2014.12.16)</p> <p>법령 제06-2015호, 법률 제766호 카지노 및 도박장 통제 및 규제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규정(Decreto 06-2015, Reglamento de la Ley “6 Ley Especial para el control y regulación de Casinos y Salas de Juegos de Azar”), 관보 제47호(2015.3.1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카지노 및 도박장은 법에 따라 수립된 범주 내에 있는 경우 허가될 것이다.</p> <p>니카라과에서 운용되는 모든 베팅 게임은 카지노 및/또는 게임장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에 의하여 그 밖의 특정 법적 제도에 따라 명백하게 규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박 게임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제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명시된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게임이 이 법의 범위상 게임의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p> <p>카지노 및 도박장의 운영은 허용된 행위이지만 국가가 장려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카지노 및 게임장의 부당한 확산 또는 그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여, 공공 질서, 공공 보안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기업의 자유 행사를 규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간주된다.</p> <p>영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우선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카지노 또는 도박장의 운영에 대한 면허(Title-License)를 취득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필요에 따라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증인이 증인으로서 적절하게 공증하고, 공공 상업 등록소에 적절하게 등록된 정관 사본을 제출한다.</p> <p>카지노 및 도박장 운영을 위한 면허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면허의 발급 이전에, 신청인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은행금융기관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y otras Instituciones Financieras)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카지노 및/또는 도박장의 면허 또는 영업 허가증의 일부 또는 전부</p>

	<p>가 폐지되거나 취소되는 제재를 받은 회사의 주주, 파트너, 이사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였던 인은 카지노 및/또는 도박장 운영에 관한 면허를 보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주, 파트너, 이사, 관리자, 대표자 또는 직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p> <p>카지노 또는 도박장을 소유한 기업 또는 회사의 주주, 파트너, 이사, 관리자, 대리인 또는 직원인 인이 카지노 및 도박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에 플레이어 또는 베테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다.</p> <p>금지된 게임을 수입 또는 운영하거나 그러한 게임으로 어떠한 상업적 활동을 개발하는 것은 니카라과 전 영역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게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수입, 제조, 판매 또는 운영될 수 없다. 권한 있는 당국은 합당한 결정에 따라 금지된 게임의 유형을 결정할 것이다. 운영자가 상응하는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카지노 또는 도박장 운영 시설이 해당 영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게임 카탈로그에 열거된 도박으로 어떠한 상업적 행위를 운영 또는 개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p> <p>학교, 교회, 병원, 관청, 목사, 공동묘지, 로드 캠프(road camp), 극장, 시장 및 스포츠센터로부터 4백 미터 내에서는 카지노 및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된다.</p>
--	--



5. 분야	사업서비스(주류 판매 관련)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상법(Código de Comercio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관보 제248호(1916.10.30)</p> <p>법률 제306호, 니카라과 공화국 관광산업 인센티브법 (Ley No. 306, Ley de Incentivos para la Industria Turís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168호(1999.9.2) 및 그 개정</p> <p>법령 제26-96호, 니카라과 경찰법에 관한 규정(Decreto 26-96, Reglamento de la Ley de la Policía Nacional), 관보 제32호(1997.2.14)</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카지노, 나이트 클럽, 디스코텍, 코커럴(cockerel) 및 허용된 모든 종류의 도박장 운영에 대하여 허가가 요구된다.</p> <p>호텔서비스 및 유사한 숙박시설, 식음료 공급, 디스코텍, 코커럴 및 허용된 모든 종류의 도박장, 바, 펍, 그리고 당구장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외국 시민은 적절하게 갱신된 거주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p> <p>법적 실체는 해당 등록소에 적절하게 등록되어야 하고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6. 분야	건설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327호, 설계 및 건설 활동 규제법(Decreto No. 237, Ley Reguladora de la Actividad de Diseño y Construcción), 관보 제263호 (1986.12.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은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외국 국민은 니카라과에 거주하거나 니카라과에 있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7. 분야	폭죽의 제조 및 유통 화기 및 탄약의 유통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10호,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물질의 통제 및 규제에 대한 특별법(Ley No. 510, Ley Especial para el Control y Regulación de Armas de Fuego, Municiones, Explosivos, y otros Materiales Relacionados), 관보 제40호(2005.2.25) 및 그 개정</p> <p>법령 제26-96호, 니카라과 경찰법에 관한 규정(Decreto 26-96, Reglamento de la ley de la Policía Nacional), 관보 제32호(1996.2.14) 및 그 개정</p> <p>법령 제28-2005호, 법률 제510호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물질의 통제 및 규제에 대한 특별법에 관한 규정 (Decreto No. 26-96, Reglamento a la Ley No. 510, Ley Especial para el Control y Regulación de Armas de Fuego, Municiones, Explosivos, y otros Materiales Relacionados), 관보 제78호(2005.4.22) 및 그 개정</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서 폭죽을 제조 및 상업화하고 화기 및 탄약을 유통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은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고 외국 국민은 니카라과에 거주하여야 한다.</p>

8. 분야	민간보안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903호, 민간보안서비스법(Ley No. 903, Ley de Servicios de Seguridad Privada), 관보 제141호(2015.7.29)</p> <p>수상운송국 결의안 제026-2013호, 보안감시회사 및 항구보안인력 수권 및 인가(Resolución DGTA 026 – 2013, Habilitación y Acreditación de Empresas de Vigilancia y Personal Guardas de Seguridad Portuaria), 관보 제89호(2014.5.16)</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민간보안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니카라과에 설립되어야 한다.</p> <p>민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니카라과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갱신된 주소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취업허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무장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연인은 니카라과 국적이어야 한다.</p> <p>국토교통부 수상운송국(Dirección General de Transporte Acuático del Ministerio de Transporte e Infraestructura - DGTA)에 등록된 인력만이 항구 내에서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9. 분야	라디오 방송, 무료 텔레비전 수신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서비스 일반법 및 그 개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y sus reformas), 관보 제154호(1995.8.18) 및 그 개정</p> <p>행정협약 제07-97호,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No. 07-97 Reglamento del Servicio de Radiodifusión Televisiva), 관보 제228호(1997.11.28)</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사회적 대중 매체(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및 AM/FM 라디오 방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는 니카라과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여된다. 기업의 경우, 니카라과 국민이 기명된 총 자본의 51퍼센트를 소유하여야 한다.</p>

10. 분야	통신 - 전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66호, 니카라과인 아나운서만 니카라과 방송사 및 텔레비전의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 가능(Decreto No. 66, En radiodifusoras y televisiones del país, únicamente locutores nicaragüenses podrán ser utilizados para las narraciones de programas deportivos), 관보 제256호 (1972.11.10)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스포츠나 이와 유사한 상업적 프로그램의 진행·해설·생중계 또는 재전송과 관련하여 니카라과인 아나운서의 전문적 서비스만을 사용한다.</p> <p>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법이 니카라과 국민에게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 외국 국민은 아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p> <p>다른 국가에 독점적으로 전송되는 외국인 아나운서 프로그램의 경우, 이 조치의 규정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방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b>11. 분야</b>	통신 - 서비스 및 공중통신망
<b>하위분야</b>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법령 제19-96호, 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9-96 Reglamento de la 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77호(1996.9.19) 및 그 개정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통신서비스 마케팅 제공을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인 니카라과 정보통신 우편청(Instituto Nicaraguense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 TELCOR)의 허가가 요구된다. 그러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법인은 니카라과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외국인은 니카라과에 유효한 거주 허가 및 법적 주소를 보유하여야 한다.</p>

12. 분야	통신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1995.8.18)</p> <p>법령 제19-96호, 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9-96 Reglamento de la 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77호(1996.9.19)</p> <p>니카라과 공화국 상법(Código de Comercio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관보 제248호(1916.10.3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통신 및 우편 서비스 제공 또는 통신 주파수나 그 밖의 전송 수단의 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우편청이 부여한 자격 서류(양해, 면허, 등록 또는 인허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격 서류는 니카라과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니카라과에 법적 대리인을 두고 해당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될 것이며, 또한 니카라과 공화국의 관할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고 통신 및 우편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법, 규정, 규칙, 결의안 및 행정약정의 모든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p> <p>회사가 외국 정부와 체결하고자 하는 상호접속 계약 또는 통신 분야의 그 밖의 모든 계약은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우편청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p>



13. 분야	통신 - 공중통신망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1995.8.18) 및 그 개정</p> <p>행정협약 제 06-97호, 가입형텔레비전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No. 06-97, Reglamento del Servicios de Televisión por Suscripción), 관보 제 205호(1997. 10. 28)</p> <p>행정협약 제02-97호, 위성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02-97: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Comunicaciones por satélite), 관보 제74호(1997.4.22)</p> <p>법령 제32-2012호, 법령 제128-2004호 TELCOR 기본법에 관한 일반규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Decreto No. 32-2012, Reformas y Adiciones al Decreto No. 128-2004,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Orgánica de TELCOR), 관보 제188호(2012.10.3)</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가입형텔레비전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중통신망을 설치, 운영 또는 사용하려면,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우편청에서 부여한 허가가 요구된다.</p> <p>위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신호를 직접 판매하는 회사 및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정보통신우편청과 신호랜딩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위성통신서비스를 판매하고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시스템과 관련한 신호 및 주파수의 발신 및 수신 권한을 이용하려면, 정보통신우편청에서 부여한 허가가 요구된다.</p> <p>민간 네트워크 운영자의 시설을 포함하여, 무선 전기 주파수의 할당을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양허 및 허가에서 특별히 승인되지 아니한 시설을 설립하려면 정보통신우편청에서 부여한 허가가 요구된다.</p> <p>위성라디오서비스에 할당 및/또는 부여된 위성 궤도 및 무선 전기 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 및 활용에 대한 권리는 양허 계약에 따라 부여된다.</p> <p>위성 궤도 및 그 무선 전기 주파수 스펙트럼의 관리 및 조정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관련 기관, 공공 및/또는 민간 기관들과 함께 정보통신우편청의 독점적인 권한이다.</p>

14. 분야	통신 - 서비스 및 공중정보통신망(전화 포함)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p>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1995.8.18) 및 그 개정</p> <p>법령 제19-96호, 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9-96, Reglamento de la 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77호(1996.9.19) 및 그 개정</p> <p>행정협약 제001-2004호, 서비스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경로 설정, 가용성 및 보안을 위한 국가계획의 정교화 및/또는 수정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001-2004, Reglamento para la Elaboración y/o Modificación de los Planes Nacionales de Encaminamiento, Disponibilidad y Seguridad del Tráfico de los Servicios y Redes de Telecomunicaciones), 관보 제20호(2004.1.29) 및 그 개정</p> <p>행정협약 제20-99호, 상호접속 및 접근에 관한 일반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20-99, Reglamento General de Interconexión y Acceso), 관보 제146호(1999.8.2)</p> <p>행정협약 제02-97호, 위성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02-97,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Comunicaciones por Satélite), 관보 제74호(1997.4.22)</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이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는, 공중에 제공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간 사용자 정보의 유형 또는 내용이 변동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지점 사이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실시간 전송과 관련된다. 다음의 경우, 정보통신우편청이 부여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요구된다.</p> <p>가. 무선 기반시설의 설치 및 니카라과 영역 내 주파수 밴드의 사용, 활용 또는 이용. 다만, 출력이 50밀리와트 미만인 비의도적 또는 의도적 방사체 내의 산업, 과학 및 의료 장비, 또는 정보통신우편청의 그 밖의 규칙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공중 통신 망 운영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또는 인가 받은 망 운영자의 서비스 판매</p> <p>다.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운영 및 위성통신서비스의 상업화, 그리고</p> <p>라.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위성 시스템과 연계된 주파수 밴드 신호의 발신 및 수신 권한 이용</p> <p>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설 망 운영자는 니카라과 정보통신우편청에서 부여하는 자격요건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러한 망은 공중 통신 망의 성격을 가진다. 정보통신우편청의 의견에 따라 사설 망을 사용하는 특정 서비스의 상호접속에 관한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설 망 운영자에게는 허가 인증서를 요구할 것이다.</p> <p>자격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연인 및 법인은 법률 제 200호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의 자연인은 니카라과 내 거주지 및 법적 주소 확인증을 소유하여야 하며 외국의 법인은 니카라과 공화국 상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공중 통신 망은 정의된 네트워크 중단 점 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공중 통신 망은 사용자의 통신설비 및 망 완료 지점을 넘어서 위치한 통신 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p> <p>휴대전화서비스의 주파수 밴드에 대한 허가 증명서는 공개 입찰 절차를 통하여 정보통신우편청이 부여할 것이다. 특정 시장 부문의 스펙트럼에 대한 요청 수가 그러한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는데 요구되는 무선 주파수의 가용성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우편청은 무선 전기 스펙트럼의 할당 허가를 위한 공개 입찰을 수행할 것이다.</p> <p>외국 국가 중 국제 서비스 공급에 경쟁 조건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우편청은 비례성, 상호접속 지점 및 다른 사업자에 의한 입력 트래픽의 접수에 대한 비차별성의 요건을 설립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운영자는 국제 장거리 전화(ILD)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운영자에게 속한 각 노드 또는 교환국의 기록을 정보통신우편청에 제출하고 최신으로 유지한다. 등록되고 최신화된 국제 라우팅 경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운영자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한 국제 장거리 전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당사자들 간에 서명된 상호접속 계약서 사본을 정보통신우편청에 통보하고 제출한다.</p>
--	--

15. 분야	배전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839호, 법률 제272호 「전력산업법」 및 법률 제 554호 「에너지 안정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 그리고 법률 제661호 「전기 서비스 유통 및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법」 및 법률 제641호 「형법」에 대한 개정(Ley No. 839 Ley de Reformas y Adiciones a la Ley 272,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a la Ley No. 554, “Ley de Estabilidad Energética”, de Reformas a la Ley No. 661, “Ley para la distribución y el uso responsable del servicio público de energía eléctrica” y a la Ley No. 641, “Código Penal”), 관보 제113호(2013.6.19)</p> <p>법률 제272호, 전력산업법(Ley No. 272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관보 제74호(1998.4.23) 및 그 개정</p> <p>2011년 에너지 분야 법률 요약(Digesto Jurídico del Sector Energético 2011), 관보 제176호(2012.9.1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배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p> <p>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력 유통업자는 전력 생산 및/또는 전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립 시스템에 제공되는 배전서비스, 또는</li> <li>2. 국가종합전력망시스템(SIN)과 연결 시 자가발전용량이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li> </ol>

<b>16. 분야</b>	전력 - 30MW를 초과하는 수력발전프로젝트에 의한 발전
<b>하위분야</b>	
<b>관련의무</b>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법률 제620호, 국가수자원 일반법(Ley No. 620, Ley General de Aguas Nacionales), 관보 제150호 및 제151호(2010.8.9 및 2010.8.10)  법령 제44-2010호, 법률 제620호 국가수자원 일반법에 관한 규정 (Decreto 44-2010, Reglamento a la Ley No. 620, Ley General de Aguas Nacionales), 관보 제150호(2010.8.9)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설비용량이 30MW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25 평방 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최고 수위를 유지하는 저수지가 있는 수력발전소는 각 프로젝트에 따라 특별 · 특정 법이 요구된다.

17. 분야	에너지 - 지열 에너지 발전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법률 제443호, 지열 자원 탐사 및 개발법 및 그 개정(Ley No. 443, Ley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Recursos Geotérmicos y sus reformas), 관보 제222호(2002.11.21)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 MEM)의 승인을 득한 후 니카라과 전력공사(Empresa Nicaragüense de Electricidad)의 참여를 통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은 지열 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예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니카라과 전력공사는 니카라과 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가 유산으로 지정된 지열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참여를 통해 부과금 없이 신청 회사 주식의 최소 10퍼센트를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18. 분야	광업 부수 서비스 - 탄화수소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p> <p>법률 제286호,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특별법(Ley No. 286, Ley Especi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관보 제109호(1998.6.12) 및 그 개정</p> <p>법률 제883호, 니카라과 석유공사(PETRONIC) 기본법 및 그 통합 개정[Ley No. 883, Ley Orgánica de la Empresa Nicaragüense de Petróleos (PETRONIC), con sus reformas incorporadas], 관보 제239호(2014.12.17)</p> <p>법령 제43-98호,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특별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43-98, Reglamento a la Ley Especi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관보 제117호(1998.6.24) 및 그 개정과 추가 사항</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탄화수소의 탐사 및 분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 및 니카라과 내 영구 주소지를 보유한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유지한다.</p> <p>지질학, 지구 물리학, 지형도 작성, 지진 작업 또는 지구 화학 연구와 같은 탄화수소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니카라과에 영구 주소지를 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전문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니카라과 국적의 하도급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에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계약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니카라과 국적의 하도급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p> <p>그러한 서비스가 니카라과 내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서비스가 품질 기술 사양, 비용 및 적시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업자와 하도급업자는 해외에서 제품, 재료 및 장비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다.</p> <p>천연 상태의 탄화수소 매장층은 국가 유산의 일부이다. 니카라과 공화국 영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그러한 매장층 영역은 국가의 책임이다. 니카라과 석유공사로 대표되는 국가는 비용 또는 위험 부담 없이</p>

	<p>법률 제879호에 규정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p> <p>니카라과에서 생산된 탄화수소의 표면 조사, 탐사 및 개발과 그 운송, 저장 및 마케팅 활동에서, 니카라과 석유공사는 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탄화수소 자원의 발굴, 탐사 및 이용에 연관된 모든 청원에 집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목적상, 요청을 제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에너지광업부에 대한 신청 과정에서 니카라과 석유공사의 참여에 대한 협정을 먼저 체결하여, 법률 제286호에 따른 허가 취득 또는 계약 체결 행위에 관심이 있는 회사와의 협력 및/또는 제휴 모델을 지지하여야 한다.</p> <p>니카라과 석유공사로 대표되는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위험, 부채,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는 법률 제286호 제2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한다.</p> <p>니카라과에서 생산된 탄화수소의 표면 조사, 탐사 및 개발, 그리고 운송, 저장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니카라과 석유공사의 참여는 니카라과 석유공사에 계약자 이사회의 의석을 부여한다.</p> <p>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인은 니카라과 석유공사의 참여를 명시한 문서를 에너지광업부 탄화수소국장에게 제출한다.</p> <p>계약 만료시, 계약자는 토지, 영구적 작업물 및 시설물 등 니카라과 석유공사로 대표되는 국가에서 제공한 자산을 부과금 없이 반환한다.</p> <p>니카라과 석유공사는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및 상업화, 그리고 그 밖의 관련 활동의 수행을 목표로 할 것이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정제, 액화석유가스 실린더 충전 공장 또는 포장의 건설 및/또는 운영에 투자하는 회사 및/또는 제휴사의 구성 및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니카라과 국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일 수 있고 공공, 민간, 또는 혼합의 형태를 지닐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갖는 기존 회사와 연합 및/또는 제휴를 결성할 수 있다.</p>
--	---



19. 분야	광업 부수 서비스 -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전기 및 수도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57-2006호, 법령 제119-2001호 「광산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특별법(법률 제387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 (Decreto No. 57-2006, Reformas y Adiciones al Decreto No. 119-2001, Reglamento de la Ley No. 387, Ley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관보 제170호(2006.8.31)</p> <p>법령 제119-2001호, 법률 제387호 광산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19-2001, Reglamento de la Ley No. 387, Ley Especi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관보 제4호(2002.1.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 회사, 자연인 및 법인은 자신의 고객을 대신하여 권리 및 계약 의무를 획득하고, 회사를 적절한 등록부에 등록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 단계에서 광업 양허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한 권한을 가진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20. 분야	어업 및 양식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489호, 어업 및 양식업 관련법(Ley No. 489, Ley de Pesca y Acuicultura), 관보 제251호(2004.12.27) 및 그 개정</p> <p>법령 제30-2008호, 법령 제09-2005호 어업 및 양식업 관련 법(법률 제489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Decreto No. 30-2008, Reforma al Decreto No. 09-2005, Reglamento a la Ley No. 489, Ley de Pesca y Acuicultura), 관보 제130호(2008.7.9)</p> <p>법령 제009-2005호, 법률 제489호 어업 및 양식업 관련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009-2005, Reglamento a la Ley No. 489, Ley de Pesca y Acuicultura), 관보 제40호(2005.2.25)</p> <p>법령 제40-2005호, 고도 회유성 참치 및 관련 어종의 어업에 대한 특별 규정(Decreto No. 40-2005, Disposiciones Especiales para la pesca de Túnidos y especies afines altamente migratorias), 관보 제117호(2005.6.17)</p> <p>NTON 제03-045-03호, 니카라과 어업 방법 및 양식에 관한 표준 기술의 무 및 관련 부속서(NTON 03-045-03, Norma Técnica Obligatoria Nicaragüense Métodos y Artes de Pesca y sus Anexos), 관보 제231호 및 제236호(2010.12.2 및 2010.12.10)</p> <p>각료협의 제014-2001호, 국가영역의 천연자원 사용권리 취득 요청 처리를 위한 행정규정(Acuerdo Ministerial No. 014 - 2001, Disposiciones Administrativas para la Tramitación de Solicitudes de Obtención de Derechos para el Aprovechamiento de Recursos Naturales del Dominio del Estado), 관보 제98호(2001.5.25)</p> <p>행정협의 PA 제005/2013호(Acuerdo Ejecutivo-PA-No.005/2013), 관보 제81호(2013.5.6)</p> <p>행정결의 PA 제006-2014호, 수생생물자원의 수집 및 이동 마케팅을 위한 조치 및 어류관리메커니즘(Resolución Ejecutiva PA-No.006-2014, Medidas y mecanismos de ordenación pesquera para el acopio y comercialización móvil de recursos hidrobiológicos), 관보 제123호(2014.7.3)</p>
유보내용	<p><u>투자</u></p> <p>상업적 어업 허가 취득을 위하여, 니카라과 법인으로서의 설립, 공공사업등록소(Registro Público Mercantil)에의 적법한 등록 및 니카라과 내</p>

	<p>영주권과 명확한 주소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의 임명이 요구된다.</p> <p>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한 수산 자원의 사용은 니카라과 선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에 보조적이며, 관련 법에 수립된 규정 및 니카라과가 비준한 국제협정과 조약에서 수립한 조건 및 제한에 따를 것이다.</p> <p>영세 또는 소규모 어업은 니카라과 국민에게만 독점적으로 유보된다.</p> <p>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어업 및 양식 생산은 니카라과 영역 내에 적법하게 승인 및 설치된 공장에서, 각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 및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p> <p>승선인력의 90퍼센트와 선장의 100퍼센트는 니카라과인이어야 한다.</p> <p>제한 접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어업을 하려는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는 어떠한 면허 또는 어업 허가도 부여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법률 제489호의 발효일에 부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한 접근 제도에 따라 완전 개발이 선포된 자원은 카리브 해의 닭새우(spiny lobster) 자원 및 카리브 해 및 태평양 빼네이도스(Peneidos) 어족의 연안 새우 자원이며, 추후 니카라과 수산양식연구소(INPESCA)에서 선포하는 자원 목록도 포함한다.</p> <p>다랑어류 및 고도 회유성 유사 다랑어류 어업에 대한 특별 허가는 니카라과 국기를 게양한 선박, 니카라과 자연인이나 법인이 지닌 구매 옵션의 유무에 관계없이 나용 또는 임대된 외국 국적의 선박, 또는 외국의 참여가 있는 니카라과 국적 기업에 부여될 수 있다.</p> <p>과학 및 스포츠 낚시 또는 공개 접근이 가능한 자원의 상업적 어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만 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부여된 허가를 저해함이 없이, 접근이 제한된 자원에 대한 상업적 어업을 위한 승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선원의 대다수가 외국인인 선박에 승선하는 니카라과인 인력의 점진적 충원에 대하여 국가노동법이 적용될 것이며, 이는 진행 중인 인력 대체로 인한 것이다. 그러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새로 고용된) 니카라과 인력을 위한 역량 강화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한다.</p>
--	--

<b>21. 분야</b>	모든 분야
<b>하위분야</b>	소비자, 신용협동조합, 농업, 생산, 노동, 주택, 어업, 공공서비스, 문화, 교육, 청년협동조합 및 주민 혜택을 위한 그 밖의 종류의 협동조합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p>법률 제499호, 협동조합 일반법(Ley No. 499 Ley General de Cooperativas), 관보 제17호(2005.1.25)</p> <p>법률 제84호, 농업 및 농공 협동조합법(Ley No. 84, Ley de Cooperativas Agropecuarias y Agroindustriales), 관보 제62호 (1990.3.28)</p> <p>법령 제16-2005호, 법률 제499호 협동조합 일반법에 관한 규정 (Decreto No. 16-2005 Reglamento de la Ley No. 499, Ley General de Cooperativas), 관보 제55호(2005.3.18)</p>
<b>유보내용</b>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협동조합의 설립시, 외국 국적 파트너의 비율은 전체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니카라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외국 국민은 니카라과 거주자로서 이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니카라과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시 외국 국적 파트너의 비율은 전체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외국 국민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p>

22. 분야	육상 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24호, 육상 운송 일반법(Ley No. 524, Ley General de Transporte Terrestre), 관보 제72호(2005.4.14) 및 그 개정  법령 제42-2005호, 법률 제524호 육상 운송 일반법에 관한 규정 (Decreto No. 42-2005, Reglamento a la Ley No. 524, Ley General de Transporte Terrestre), 관보 제113호(2005.6.16), 그 개정 및 추가 사항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영역 내 모든 형태의 화물 운송은 니카라과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화물 소유 회사가 니카라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는 외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특수 화물에 대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p> <p>니카라과에 설립된 외국 국제 화물 회사는 다음의 특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는 니카라과인이 소유한다.</li> <li>2. 회사의 지배 및 관리는 니카라과인이 수행한다.</li> </ol> <p>지역 화물은 니카라과 국적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운송될 수 있으며, 니카라과 및 그 당국은 중미 경제 통합체(SIECA) 가입국 국적의 차량 소유주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이는 그 출신 국가에서 니카라과 국민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중미 지역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 및 임시 항구로 이동하는 화물의 경우, 그러한 화물의 지역 내 및 국내 운송은 니카라과 국적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수행되며, 상호주의 원칙과 중미 경제 통합체에 의하여 수립된 규정을 준수한다.</p> <p>국가 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은 니카라과 영역의 어떠한 지점으로든 니카라과 국적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이동될 수 있다.</p> <p>니카라과인만이 니카라과 내륙에서 공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23. 분야	해상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399호, 수상운송법(Ley No. 399, Ley de Transporte Acuático), 관보 제166호(2001.9.3)</p> <p>법령 제15-49호, 도선서비스에 관한 규정법(Decreto No. 15-49, Ley Reguladora para el Servicio de Practicaje), 관보 제4호(1985.1.5)</p> <p>각료협의 제66-2007호, 국내항구에서 화물 적재 및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회사 및 협동조합의 허가에 관한 규칙 (Acuerdo Ministerial No. 66-2007, Normas para la habilitación de empresas, compañías y cooperativas prestatarias del servicio de estiba y desestiba de carga en los puertos nacionales), 관보 제2호(2008.1.3)</p> <p>수상운송국 결의안 제21-2014호(Resolución DGTA No. 021-2014), 관보 제121호(2014.7.1)</p> <p>수상운송국 결의안 제004-2014호(Resolución DGTA No. 004-2014), 관보 제35호(2014.2.21)</p> <p>수상운송국 결의안 제030-2009호(Resolución DGTA No 030-2009), 관보 제63호(2014.4.2)</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선주 또는 선박회사로서 영업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니카라과 국민이어야 하며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p> <p>운송 대리인, 일반 운송 대리인 또는 운송 수탁 대리인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니카라과인이어야 하며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p> <p>니카라과 국민 또는 니카라과에서 설립된 회사만이 해상운송에 종사하기 위한 노선 양허를 취득할 수 있다.</p> <p>상업적 목적의 내륙 교통 및 연안 운송을 위한 선박의 운영 및 사용은 니카라과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유보되고 니카라과 국적의 선주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상호주의 조건에 따라, 니카라과 국적 선주는 그 밖에 모든 중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사용할 수 있다.</p>

	<p>니카라과 국민만이 니카라과 내 모든 항구의 공식 도선사로 임명될 수 있다.</p> <p>니카라과 항구에서 화물 적재 및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되고자 하는 기업, 회사 및 협동조합은 다음을 준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니카라과 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다. 합자회사의 경우 해당 주식은 기명주식이어야 하고, 해당하는 경우 모든 주식이 관할 공공 등록부 또는 노동부에 등록되어야 한다.</li> <li>2.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둔다.</li> <li>3. 기업, 회사 또는 협동조합의 화물 적재 및 하역이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할 각 항구에 충분한 인적자원 및 숙련된 기술자를 갖춘 상시 사무소를 둔다. 이 요건의 검증을 위하여 사무실 부지에 관한 소유 또는 임대, 그리고 직원의 임명 또는 계약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li> <li>4. 일반 운송 대리인, 운송 수탁 대리인 또는 통관 대리인이 아니어야 한다.</li> </ol> <p>신규 하역회사의 승인은 각 국가 항구에서 그 동안 처리한 물동량, 항구 시설의 운영 능력 및 기존 하역회사의 운영 능력에 따른다. 니카라과 내 항구에서의 신규 회사 운영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승인 위원회에 그 권한이 있다.</p> <p>보트서비스는 수상운송국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발급한 영업 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p> <p>수상운송국이 부여한 영업 면허는 항구 기계장치 및 장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된다.</p> <p>법률 제399호 수상운송법 제3조에 정의된 전문 서비스 또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공식 절차(요건 서류)에 기재된 요건 및 수상운송국 결의안 제030-2009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	--

2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800호, 니카라과 대양간 대운하 관련 법적 제도 및 니카라과 대양간 대운하청 설립에 대한 법(Ley No. 800, Ley del Régimen Jurídico de el Gran Canal Interoceánico de Nicaragua y de creación de la Autoridad de el Gran Canal Interoceánico de Nicaragua), 관보 제128호(2012.7.9)</p> <p>법률 제840호, 니카라과 운하, 자유무역지역 및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및 운송 개발에 대한 특별법(Ley No. 840, Ley Especial para el Desarrollo de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Nicaragüense Atingente a El Canal, Zonas de Libre Comercio e Infraestructuras Asociadas), 관보 제110호(2013.6.14)</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대운하청은 특별 경제구역에서 이행될 수 있는 경제 활동 및 이러한 각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다.</p> <p>니카라과 대양간 대운하 프로젝트에 포함된 각 하위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니카라과는 대형 인프라개발 주식회사(Empresa Desarrolladora de Grandes Infraestructuras, S.A.) 및 그 양허권자에게 상업적 운영의 개시로부터 50년 동안 기본양허협정에 따른 독점적 양허권을 부여한다. 이 기간은 기본양허협정에 언급된 연장의 적용을 받아 각 경우에 대하여 추가로 50년 동안 연장 가능하며, 그러한 연장은 최초 양허 기간의 종료일 이후 즉시 시작될 것이다.</p>



25. 분야	운송 - 항공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95호, 민간 항공학 일반법(Ley No. 595, Ley General de Aeronáutica Civil), 관보 제193호(2006.10.5)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 등록된 항공기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니카라과의 자연인 또는 법인 <p>공동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 항공기 가치의 절반을 초과하는 권리를 보유한 다수는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는</p> <p>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인 경우, 니카라과 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니카라과에 법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p> </li> <li>2. 니카라과에 영구 주소가 있는 외국 자연인</li> <li>3. 신용구매계약 또는 구입 옵션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 그 등록 및 재적(在籍)은 잠정적이다.</li> </ol>

26. 분야	운송 - 항공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95호, 민간 항공학 일반법(Ley No. 595, Ley General de Aeronáutica Civil), 관보 제193호(2006.10.5)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 등록된, 항공운송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기를 소유하려면 니카라과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p> <p>보유한 전문성과 관련된 모든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연인 또는 기업은 항공국(Aviation Authority)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적용 가능한 규정, 기술 기준, 그리고 특히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전문성에 따른 기술적 및 경제적 역량 보유, 그리고</li> <li>2. 니카라과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li> </ol> <p>니카라과 내에 특정 전문성을 지닌 항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회사 또는 항공기가 없는 경우, 항공 당국은 항공기 및 그 소유자의 니카라과 국적 준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p>

27.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2호, 니카라과 전문직 편입법(Decreto No. 132, Ley de Incorporación de Profesionales en Nicaragua), 관보 제47호(1979.11.2)  국회 법령 제7539호, 「대학 전문직 종사 및 학사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승인 법령(Decreto A.N. 7539, Decreto de Aprobación del “Convenio sobre el Ejercicio de Profesiones Universitarias y Reconocimiento de Estudios Universitarios”), 관보 제131호(2014.7.1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 전문가는 그러한 전문가의 출신 국가에서 니카라과인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니카라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 관할권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또는 증명서의 신청 및 수령을 니카라과 국민에게 허가하는 경우, 니카라과는 그러한 관할권 내에서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증명서를 보유한 외국 국민 또한 니카라과 내에서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면허 또는 증명서를 신청 및 수령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니카라과 내 관련 전문가협회는 외국 관할권이 부여한 면허를 인정할 것이며, 그 면허 소지자가 그러한 면허에 기초하여 니카라과 내에서 협회에 등록하고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가. 니카라과 내 어떠한 교육기관도 니카라과에서 그 전문직의 수행을 허용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면허 소지자가 해당 전문분야에서 인정 받은 전문가인 경우, 또는  다. 니카라과에서 해당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훈련, 시연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통하여 니카라과에서 그 전문직의 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출생에 의한 중미 국적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대학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미 국가들 중 한 국가에서 전문가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부 디플로마를 취득한 경우, 그러한 중미국적자는 니카라과에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전문가는 니카라과 대학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한다. 상기 규정은 해당하는 인이 중미 국가 중 하나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적용된다.

28. 분야	기업에 제공되는 공공회계 및 감사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6호, 공인회계업무수행법(Ley No. 6, Ley para el Ejercicio de Contador Público), 관보 제94호(1959.4.30)</p> <p>법률 제561호,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그룹에 대한 일반법(Ley No. 561, Ley General de Bancos, Instituciones Financieras No Bancarias, y Grupos Financieros), 관보 제232호(2005.11.30)</p> <p>법률 제587호, 자본시장법(Ley No. 587, Ley de Mercado de Capitales), 관보 222호(2006.11.15)</p> <p>법률 제733호, 보험, 재보험 및 채권에 대한 일반법(Ley No. 733, Ley General de Seguros, Reaseguros y Fianzas), 관보 제162호(2010.8.25), 제163호(2010.8.26) 및 제164호(2010.8.27)</p> <p>법률 제734호, 일반보세창고법(Ley No. 734, Ley de Almacenes Generales de Depósitos), 관보 제201호(2010.10.21) 및 제202호(2010.10.22)</p> <p>결의안 CD-SIBOIF-739-1-AGOS2-2012호, 외부감사기준(Resolución CD-SIBOIF-739-1-AGOS2-2012: Norma sobre Auditoría Externa), 관보 제211호(2012.11.5)</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계사로 구성된 회사 및 외국 협회는 개인 또는 회사의 형태로, 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해당 전문직 또는 어떠한 관련 활동도 수행할 자격이 없다. 다만, 니카라과 공인회계사의 회사 또는 협회를 통하여, 또는 니카라과 내에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둔 외국 회사를 통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은행금융기관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에 외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감사법인은 은행금융기관감독원의 외부감사인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p>

29. 분야	전문직서비스 – 공증인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60호, 니카라과 공화국 사법부 기본법 및 그 개정 (Ley No. 260,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137호(1998.7.23)</p> <p>법령 제63-99호, 법률 제260호 니카라과 공화국 사법부 기본법에 관한 규정 및 그 개정(Decreto No. 63-99, Reglamento a la Ley No. 260,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104호(1999.6.2)</p> <p>법령 제132호, 니카라과 전문직 편입법(Decreto No. 132, Ley de Incorporación de Profesionales en Nicaragua), 관보 제47호(1979.11.2)</p> <p>공증법, 니카라과 민사 소송법 부속서(Ley del Notariado, Anexo al Código Procedimiento Civil de Nicaragua)</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공증서비스를 수행하려는 공증인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고 출생에 의해 니카라과 국적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p> <p>출생에 의한 중미 국적 소지자는 니카라과에 최소 5년간 거주한 후 니카라과에서 공증인으로 활동하도록 승인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국적 소지자가 자신의 국가에서 공증인으로 활동하도록 허가를 받고, 니카라과인이 그 국적 소지자의 국가에서 공증인으로 활동하도록 승인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p>

30. 분야	관세사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중미 통합 관세규약(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관보 제41호(1966.2.18)  결의안 제24-2008호, 중미 통합 관세규약에 관한 규정(Resolución No. 24-2008, Reglamento de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관보 제136호(2008.7.17), 제137호(2008.7.18), 제138호(2008.7.21), 제139호(2008.7.22), 제140호(2008.7.23), 제141호(2008.7.24), 및 제142호(2008.7.25)  법률 제265호, 수입, 수출 및 기타 제도에 대한 자동발송수립법(Ley No. 265, Ley que establece el Auto despacho para la Importación, Exportación y otros Regímenes), 관보 제219호(1997.11.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다음의 인만이 재정신용부에서 발급한 면허를 득하여 관세사가 될 수 있다.  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 니카라과 국민  나. 관세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세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가능한 경우 다른 학문 영역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중미국 국민, 또는  다. 니카라과인의 관세사서비스 공급이 허용된 국가 출신의 외국 국민  니카라과에서 관세사로서 영업하려는 기업은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그 관세 기업의 최소 1인의 직원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31. 분야	과학연구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316호, 천연자원개발에 대한 일반법(Decreto No. 316, Ley General sobre Explotación de Nuestras Riquezas Naturales), 관보 제83호 (1958.4.17)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비거주 외국 국민 또는 그 대리인은, 니카라과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조사승인확인서가 요구될 것이다.</p> <p>이 조사승인확인서는 천연자원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 조사 실시만을 승인한다. 운영 면허 소지자 또는 탐사·개발 양허권자에게 권한이 부여된 업무나 행위는 시행할 수 없다.</p> <p>모든 양허권자 또는 외국 면허 소지자는 충분한 권한을 갖춘 대표자를 향시 니카라과에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p>

32. 분야	자유지역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하위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917호, 자유무역수출지역법(Ley No. 917, Ley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ón), 관보 제196호(2015.10.16)</p> <p>법률 제382호, 역내가공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임시승인법(Ley No. 382, Ley de Admisión Temporal para Perfeccionamiento Activo y de Facilitación de las Exportaciones), 관보 제70호(2001.4.16)</p>
유보내용	<p><u>투자</u></p> <p>자유지역 사업자는 개인 영역의 자유지역에 속하며, 이러한 자유지역은 그 지역의 관리라는 단일 목적을 지니고 니카라과 법에 따라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지역 관리를 담당하는 것 외에,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조건에 따라 자유지역에서 운영중인 회사의 적절한 운영을 촉진한다.</p> <p>자유무역지역(FTZ) 사용자 회사는 국립자유지역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Zonas Francas)가 그 지역 내 영업을 승인한 모든 사업, 산업 또는 서비스 시설을 의미한다. 모든 자유무역지역 사용자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 운영을 단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는 니카라과 공화국 상법에 수립된 절차에 따라, 자회사 또는 지사를 통하여 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p> <p>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립자유지역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과 규정의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신청 회사의 사업 운영 적절성을 고려하여 그 결정을 표명한다.</p> <p>법 규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수출에 종사하는 회사에 자유지역 내 운영 자격이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니카라과 또는 외국 회사일 수 있다.</p> <p>역내가공 임시 승인의 경우, 총 매출의 최소 25퍼센트를 수출하고 그 수출액이 연간 50,000 중미 페소(CA \$ 50,000.00) 이상인 회사에는, 법과 규정에 의해 수립된 절차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의 사전 유예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p>



33. 분야	부동산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602호, 니카라과 부동산 중개인법(Ley No. 602, Ley de Correduría de Bienes Raíces de Nicaragua), 관보 제132호(2007.7.12)</p> <p>법령 제94-2007호, 법률 제602호 니카라과 부동산 중개인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94-2007, Reglamento de la Ley No. 602, Ley de Correduría de Bienes Raíces de Nicaragua), 관보 제231호(2007.11.3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부동산 중개인 허가를 신청하는 인은 니카라과 시민이거나, 근로 제한 없는 적절한 거주 증명서/카드를 보유하고 니카라과 내에 합법적인 영구 거주지를 지닌 외국 국민이어야 한다.</p> <p>부동산중개인협회는 승인 받은 중개인 및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또한 니카라과 법에 따라 설립된다.</p> <p>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국제 부동산 중개회사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니카라과 국적의 자연인 또는 부동산 중개 법인이어야 한다.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제 회사를 대표하고 니카라과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것이다.</p>

34. 분야	음용수, 위생 하수도 시스템, 하수 수집 및 처리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620호, 국가수자원 일반법(Ley No. 620, Ley General de Aguas Nacionales), 관보 제169호(2007.9.4)</p> <p>법률 제276호, 니카라과 상하수도공사(ENACAL) 설립법(Ley No. 276: Ley de Creación de la Empresa Nicaragüense de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Sanitarios - ENACAL), 관보 제12호(1998.1.20) 및 그 개정</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식수 공급 및 분배, 그리고 폐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공공 사업의 수립, 건설 및 개발은 니카라과 상하수도공사만 수행할 수 있다.</p> <p>니카라과 상하수도공사는 음용수의 공급 및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음용수의 수집, 처리, 관리, 저장, 분배 및 판매, 폐수의 수거, 처리 및 최종 처리</li> <li>나. 천연수 구매, 음용수의 구매 및 판매, 폐수 수거·처리·최종 처리 서비스의 상업화</li> <li>다. 처리된 폐수의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li> <li>라. 공사의 단기, 중기 및 장기 확장계획 개발</li> <li>마. 수자원 관련 연구, 탐사, 개발 및 이용, 그리고</li> <li>바. 개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활동 수행</li> </ul>

35. 분야	공항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292호, 국제공항관리공사법(Decreto No. 1292, Ley de la Empresa Administradora de Aeropuertos Internacionales), 관보 제186호(1983.8.16) 및 그 개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제공항 내 업무 수립, 운영, 관리 및 집행,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국제공항관리공사의 의무이다.

36. 분야	에너지 - 송전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91호, 법률 제788호 「니카라과 송배전공사(ENATREL) 설립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법(법률 제583호)과 전력산업법(법률 제272호) 및 행정부조직역량절차법(법률 제290호)에 대한 개정」에 관한 개정 (Ley No. 791, Ley de Reforma a la Ley No. 788, Ley de Reforma y Adición a la Ley No. 583, Ley Creadora de la Empresa Nacional de Transmisión Eléctrica, ENATREL y de Reformas a las Leyes No. 272,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y No. 290 Ley de Organización, Competencia y Procedimientos del Poder Ejecutivo), 관보 제60호(2012.3.2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의 분권화된 공기업으로서, 니카라과 송배전공사(Empresa Nacional de Transmisión Eléctrica - ENATREL)만이 전력송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7. 분야	공공통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58호, 니카라과 우편 및 우편서비스 일반법(Ley No. 758, Ley General de Correos y Servicios Postales de Nicaragua), 관보 제96호(2011.5.26) 및 제97호(2011.5.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우표의 발행, 금융 및 상업화, 그리고 소인기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스템의 사용은 니카라과 우체국(Correos de Nicaragua)에 유보된다.

38.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08-2013호, 법률 제801호 지방 행정 계약법에 관한 일반규정 (Decreto No. 08-2013, Reglamento General a la Ley No. 801, Ley de Contrataciones Administrativas Municipales), 관보 제24호(2013.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부문은 계약대상 물품에 대한 규격 수립 시,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장려할 것이다.

39. 분야	통신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p>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1995.8.18) 및 그 개정</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무선 전기 스펙트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양허, 면허, 인가 또는 기록의 부여는 스펙트럼의 가용성 및 그 사용 관련 정책에 따른다.</p> <p>해상 및 항공 통신서비스는 니카라과 군대(Ejército Nacional) 및 민간 항공국(Dirección General de Aeronáutica Civil)에 의하여 허가, 설치, 운영 및 통제된다.</p> <p>니카라과를 대표하는 국제통신기관은 니카라과 정보통신우편청이다.</p> <p>국가 안보 목적상, (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통신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수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방의 목적상, 니카라과 영역 내 통신 지점은 니카라과의 자산이다. (다) 무선 스펙트럼 및 위성은 니카라과의 소유이며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고, 해당 사안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p>

40. 분야	전력 생산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72호, 전력산업법(Ley No. 272,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관보 제74호(1998.4.23) 및 그 개정과 추가 사항</p> <p>법률 제911호, 법률 제554호 에너지 안정법 및 법률 제898호 소비자 전력 변동률에 대한 개정법(Ley No. 911, Ley de Reformas a la Ley No. 554, Ley de Estabilidad Energética y a la Ley No. 898, Ley de Variación de la Tarifa de Energía Eléctrica al Consumidor), 관보 제178호(2015.9.22)</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전력 발전 분야에 참여하려는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p> <p>전력 발전에 종사하는 경제적 대리인, 자회사 또는 주주는 전력 송전 및 /또는 배전 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다만, 니카라과 전력공사는 비양허지역에 한하여 전력 발전을 수행할 수 있다.</p> <p>발전업체는 전선 또는 송전 장비의 소유자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사의 발전소를 국가종합전력망시스템과 연결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이차 송전 시스템으로 간주될 것이다.</p> <p>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전력 발전 신규 계약은 각 발전 유형별로 지정된 가격을 따른다.</p>



41. 분야	천연 자원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정치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p> <p>법률 제217호, 환경 및 천연자원 일반법(Ley No. 217, Ley General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관보 제105호(1996.6.6)</p> <p>법령 제316호, 천연자원개발에 대한 일반법(Decreto No. 316, Ley General sobre Explotación de Nuestras Riquezas Naturales), 관보 제83호(1958.4.17)</p> <p>법률 제620호, 국가수자원 일반법(Ley No. 620, Ley General de Aguas Nacionales), 관보 제169호(2007.9.4)</p> <p>법률 제749호, 국경법률시스템법(Ley No. 749, Ley del Régimen Jurídico de Fronteras), 관보 제244호(2010.12.22)</p> <p>법률 제462호, 임업부문 보존·개발·지속가능발전법(Ley No. 462, 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관보 제168호(2003.9.4)</p> <p>법률 제286호,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특별법(Ley No. 286, Ley Especi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관보 제109호(1998.6.12) 및 그 개정</p> <p>법률 제443호, 지열 자원 탐사 및 개발법 및 그 개정(Ley No. 443, Ley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Recursos Geotérmicos), 관보 제222호(2002.11.21) 및 그 개정</p> <p>법률 제883호, 니카라과 석유공사(PETRONIC) 기본법 및 그 통합 개정(Ley No. 883, Ley Orgánica de la Empresa Nicaragüense de Petróleos - PETRONIC, con sus reformas incorporadas), 관보 제239호(2014.12.1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천연 자원은 국가 유산의 일부이다. 환경 보존 및 천연 자원의 보존, 개발 및 합리적 이용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가는 국익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법률에 명시된 천연 자원의 영역, 사용 및 개발은 법률 표현의 규제를 받는다.</p> <p>니카라과 관할권에 속하는 해상 수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액체</p>

	<p>또는 기체 탄화수소 매장층, 그리고 국가 안보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역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채굴 효과의 요건을 갖춘 매장층의 탐사, 개발 및 혜택은, 각 경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요건 및 조건을 따른 행정 양허 또는 특별 운영 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p>
--	--

42. 분야	지도의 정교성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311호, 니카라과 영역연구청(INETER) 기본법(Ley No. 311, Ley y Orgánica del Instituto Nicaragüense de Estudios Territoriales - INETER), 관보 제143호(1999.7.28) 및 그 개정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영역연구청(INETER)은 공식, 토지, 도시 및 농촌 지도, 그리고 다양한 축척의 주제 지도 및 니카라과 수로·해상·항공 차트의 개발, 갱신, 편집 및 발행을 담당한다.</p>

43. 분야	복권 관리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국가 복권에 대한 내부 규정(Reglamento Interno de la Lotería Nacional), 관보 제229호(1996.12.3)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가만이 직접 자선 목적으로 복권 게임 및 사행성 게임을 운영할 수 있다.</p> <p>국영회사인 국립복권(National Lottery)만 복권 관리 및 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44. 분야	항구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838호, 니카라과 항구 일반법 및 그 규정(Ley No. 838, 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y su Reglamento), 관보 제92호 (2013.5.21)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익에 관련된 항구의 관리 및 운영은 니카라과 항만청(Empresa Portuaria Nacional - EPN)에 유보된다.</p> <p>항만청은 모든 공공 항구를 포함하는 국가 항구 시스템의 관리 당국이다. 항만청은 국가 소유의 항구 및 법률 제838호의 절차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가 부여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및 여객의 국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항구의 관리 기관이다. 또한 항만청의 관리 및 통제를 받는 지역 이익에 관련된 항구, 그리고 추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항구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다.</p> <p>공화국의 대통령은, 전략적 이익의 목적상 항만청을 통하여, 신규 공용(公用) 항구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러한 항구가 위치하는 대서양 연안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회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공공 또는 민간 법적 실체에 수상운송국의 기술 승인에 앞서 양허 및 제휴의 형태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p> <p>대서양 연안의 자치구역에 부여되는 이용 및 항구 개발을 위한 양허 및 계약은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조항 및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p> <p>자치구역(대서양 연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 투자자와 항만청 간 서명될 법률 문서는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조항에 따라 자치구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양허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은 니카라과 공화국의 법에 의해서만 배타적인 규제를 받을 것이다. 계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들 간의 우호적인 합의</li> <li>2) 대법원 내 대안분쟁해결부(Directorat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통한 조정, 또는</li> <li>3) 니카라과공화국 법에 따른 중재</li> </ol>